

의안번호	2211667
의 퇴 인	서천호의원
회 답 일	2025. 8. 25.
추 계 번 호	25B3945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제3항 신설(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조치)	시·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어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제29조제1항제2호(행정적·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)	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 2.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또는 <u>해양폐기물의 수거</u>	재량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1조제3항 신설(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 조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제29조제1항제2호(행정적·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)	

2. 상세 사유

-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 지원(안 제11조제3항 및 제29조제1항제2호)
 - 현행법은 해양에 접하는 하천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관할 하천으로부터 폐기물이 해양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유출방지시설

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, 국가는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

[표 1] 하천으로부터의 해양폐기물 유입방지 조치 현황

연도	주요 내용
2020.12	• 하천을 관리하는 ‘중앙행정기관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’ 의무 부과 – 「해양폐기물관리법」 개정(‘20.12 시행)
2020.10~	• 하천폐기물 해양유입 저감 관계기관 협의회* 구성으로 관계기관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* 중앙부처(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해양수산부), 17 지자체(광역시자치단체), 4개 공공기관(한국수자원공사, 한국수력원자력, 한국농어촌공사, 해양환경공단) 등
2021. 4./ 2021. 10.	• 하천폐기물 해양유입 저감 관계기관 협의회(‘21.4.6/10.14)를 통해 환경부 주관으로 해양유입 차단시설 설치 중장기 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하기로 결과 도출
2022.10	• 관계기관 협의회(‘22.10.19)를 통해 관계기관별 하천폐기물 해양유입 저감조치 현황 공유 및 지자체 등 건의사항 수렴
2023~	•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(위원장: 해수부장관)에 하천쓰레기 해양유입 저감대책마련, 상정(‘23.12)
2024	• 주요 하천권역별로 유역환경청,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 구성(‘24.3)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※ [참고자료] 해양폐기물 관리 현황 참고

- 개정안은 시·도지사가 폐기물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으로 유입된 해양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,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, 수거 대상 해양폐기물의 양 및 해당 해양폐기물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함
- 그러나 향후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수거 대상 해양폐기물의 양 및 수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며 개정안은 비용지원의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김성원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성원	02-6788-4650	holystone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해양폐기물 관리 현황

(해양수산부 제출자료)

□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내 해양폐기물 발생량은 매년 약 14.5만톤(초목류 포함)으로 추정('19년)¹⁾

- 이 중 약 65%(9.4만톤)는 육상쓰레기가 하천을 통해 유입된 것이고, 약 35%(5만톤)는 어업 등 해양활동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

<국내 해양폐기물 수거량>

(단위: 톤)

		2020	2021	2022	2023
해양폐기물(합계)		138,362	120,736	126,055	131,930
종류별	-해안폐기물	111,592	95,725	97,077	96,018
	-부유폐기물	8,558	6,067	6,691	10,630
	-침적폐기물	18,212	18,944	22,287	25,282
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□ 해양폐기물 처리 주체

- 해안가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서, 부유·침적폐기물은 해역관리청(국가 또는 지자체)*이 수거 중

* 국가: 배타적 경제수역(EEZ), 국가어항, 무역항, 연안항, 환경관리해역

지자체: 영해·내수

□ 정부는 육지 및 도서지역 해안가 등으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의 수거·처리와 해양쓰레기 집하장, 정화운반선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해 국비 지원중

<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 예산 현황: 2021~2025년>

(단위: 백만원)

사업명	2021	2022	2023	2024	2025
해양폐기물 정화사업(1065-301)	44,385	35,654	36,300	48,229	46,341
연안관리(1034-300)	2,100	3,500	3,500	— ¹⁾	—
해양 및 수자원 관리(1062-301)	14,106	13,596	16,193	18,273	20,295
해양 및 수자원 관리(제주)(1063-301)	700	1,080	1,450	3,936	4,054
합계	61,291	53,830	57,443	70,438	70,690

주: 1) 연안관리 사업의 일부 내역사업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으로 이관
자료: 해양수산부 제출자료

1) 출처: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연구(2018, KMI)